# 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(배현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7512 발의연월일: 2022. 9. 23.

발 의 자:배현진·김성원·서일준

이용호 · 이철규 · 임병헌

정점식 · 정희용 · 조명희

최형두 • 황보승희 의원

(11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문화재청은 1962년 「문화재보호법」 제정 이래 인위적 혹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유산으로서 역사적·예술적·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것을 문화재로 지정하고 보호하여 왔음. 그동안의 보호체계는 급격한사회변화 속에서 수많은 문화재를 현재까지 보존하고 유지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음.

그러나, 이제 「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」을 중심으로 하는 인류의 유산에 대한 국제적인 보호체계를 보다 적극적 으로 받아들이고,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우리 문화의 위상과 국민적 수요에 맞춰 다양한 전통 유산의 깊은 의미와 가치를 발굴하 여 증진시켜나갈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.

이에, 문화유산 · 자연유산 · 무형유산 등 우리의 소중한 유산을 아우

르며 선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국가유산체계를 도입하고 문화재로 표기된 현행법을 국가유산 등으로 개정함으로써 현재와 미래를 잇는 지속가능한 국가유산의 보호 기반을 구축함은 물론, 모든 국민이 보다다양하고 질 높은 문화적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고자 함(안제명, 제1조부터 제7조까지).

#### 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배현진의원이 대표발의한 「국가유산기본법안」(의안번 호 제17521호), 「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7515 호), 「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7514 호), 「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 번호 제17511호), 「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안」(의안번호 제17520호), 「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| (의안번호 제17518호), 「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7523호), 「세계유산의 보존·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의안번호 제17517호), 「역사문 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의안번호 제17513호), 「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7522호), 「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 호 제17516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 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

#### 법률 제 호

# 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안 제명 "문화재보호기금법"을 "국가유산보호기금법"으로 한다.

제1조 중 "문화재를"을 "국가유산을"로, "문화재보호기금"을 "국가유산보호기금"으로 한다.

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국가유산"이란 「국가유산기본법」제2조에 따른 국가유산을 말한다.
- 2. "지정문화유산"이란 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제2 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을 말한다.
- 3. "천연기념물등"이란 「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2 조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을 말한다.

제3조 중 "문화재의"를 "국가유산의"로, "문화재보호기금"을 "국가유산보호기금"으로 한다.

제4조제2항 중 "「문화재보호법」 제49조"를 "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49조"로, "따라 지정문화재"를 "따른 지정문화유산 관람료 또는 「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64조에 따른 천연기념물등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"문화재"를 "국가유산"으로 한다.

제5조제1호 및 제2호 중 "문화재"를 각각 "국가유산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"매장문화재"를 "매장유산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 중 "문화재"를 각각 "국가유산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7호 중 "「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제1항제3호"를 "「매장유산 보호및 조사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제1항제3호"를 "「매장유산 보호및 조사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제1항제3호"로, "비지정문화재"를 "비지정 국가유산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8호 중 "문화재"를 "국가유산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9호 중 "문화재보존관리"를 "국가유산보존관리"로 한다.

제6조제2항 중 "「문화재보호법」 제9조"를 "「국가유산기본법」 제32 조"로, "한국문화재재단"을 "한국유산재단"으로 한다.

제7조의 제목 "(문화재보호기금심의회)"를 "(국가유산보호기금심의회)"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문화재보호기금심의회"를 "국가유산보호기금심의회"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"문화재보호단체"를 "국가유산보호단체"로 한다.

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
따라 설치된 문화재보호기금심의회는 이 법에 따른 국가유산보호기금

심의회로 본다.

제3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8조제2항제2호 중 "문화재"를 "국가유산"으로 한다.

별표 2 제63호 중 "「문화재보호기금법」"을 "「국가유산보호기금 법」"으로 한다.

- ②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3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- 6. 「국가유산보호기금법」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보호기금 별표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6	「국가유산보호기금법」 제3조	「국가유산보호기금법」제5조
	에 따른 국가유산보호기금	각 호의 사업

제4조(다른 법령과의 관계)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(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령을 포함한다)에서 종전의 「문화재보호기금법」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「문화재보호기금법」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문화재보호기금법	<u>국가유산보호기금법</u>
제1조(목적) 이 법은 <u>문화재를</u> 효율적으로 보존·관리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<u>문화재보호기금</u> 을 설치하고 그관리·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	제1조(목적) <u>국가유산을</u>
한다. 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"문화재" 및 "지정문화재"란 각각 「문화재보호법」 제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문화재 및 지정문화재를 말한다.	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"국가유산"이란 「국가유산 기본법」제2조에 따른 국가유 산을 말한다. 2. "지정문화유산"이란 「문화
제3조(기금의 설치) 정부는 문화	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을 말한다. 3. "천연기념물등"이란 「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법률」 제2조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을 말한다. 제3조(기금의 설치) 국가

재의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재유산의 ---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문화재보-------호기금(이하 "기금"이라 한다)보호기금 ---을 설치한다.------

제4조(기금의 조성) ① (생 략)

- ② 「문화재보호법」 제49조 및 제74조에 따라 지정문화재 관람 료를 징수하는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징수금액의 100분의 10을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.
-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출연 또는 기부하는 자는 특정 <u>문화재</u>에 대한 지원에 용도를 지정하여 출연 또는 기부할 수 있다.

④ (생 략)

- 제5조(기금의 용도)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.
  - 문화재 보존을 위한 예방적 관리
  - 2. 훼손·유실 등으로 인한 <u>문</u> <u>화재</u>의 긴급 보수 또는 복원
  - 3. <u>매장문화재</u>의 소규모 또는 긴급 발굴

- 4. (생략)
- 5. 민간의 <u>문화재</u> 보호활동 육 성, 지원
- 6. <u>문화재</u> 보존·관리 및 안전 정책을 연구하는 단체의 운영 경비 지원
- 7. <u>「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</u> <u>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제1항</u> <u>제3호</u>에 따른 폐사지(廢寺址) 등 <u>비지정문화재</u>의 조사 및 연구
- 8. 국내외 소재 중요 <u>문화재</u>의 긴급 매입
- 9. 그 밖에 <u>문화재보존관리</u>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활 동의 지원
- 제6조(기금의 관리 및 운용) ① (생 략)
  - ② 문화재청장은 기금의 관리· 운용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「문화재보호법」 제9 조에 따라 설치된 한국문화재재 단이나 문화재청장이 지정하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.

5 <u>국가유산</u>			
 6. <u>국가유산</u>			
7. <u>「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</u> 관한 법률」 제13조제1항제3			
<u>호</u> <u>비지정국가유산</u>			
 8 <u>국가유산</u> -			
<u>국가유산보존관리</u>			
 제6조(기금의 관리 및 운용) ① (현행과 같음)			
②			
<u></u> 「국가유산기본법」 제3			
<u>2조</u> <u>한국유산재단</u> -			

4 (혀해과 간은)
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제7조(문화재보호기금심의회) ①	제7조(국가유산보호기금심의회)
기금의 관리 · 운용에 관한 다음	①
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	
여 문화재청장 소속으로 <u>문화재</u>	국가유
보호기금심의회(이하 "심의회"	<u>산보호기금심의회</u>
라 한다)를 둔다.	<u>,</u>
1. ~ 5. (생 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
② 위원장을 포함한 심의회 위	2
원의 2분의 1 이상은 공무원 및	
문화재보호단체의 관계자가 아	국가유산보호단체
닌 자로 위촉하여야 한다.	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